

忠州市議會 第150回 臨時會  
2010.11.16 (火) 11:00

# 條例案審查報告書

- (1) 희망충주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
- (2) 충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
- (3)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總務委員會

# 條例案審查報告書

## 1. 심사경과

조례안	제안일자	회부일자	상정일자	의결일자	제안설명
(1) 희망충주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	2010.10.07	2010.10.08	2010.11.10	2010.11.10	기획감사과
(2) 충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	2010.11.04	2010.11.05	2010.11.10	2010.11.10	사회복지과장
(3)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	2010.11.04	2010.11.05	2010.11.10	2010.11.10	체육시설관리소장

## 2. 제안설명요지

### (1) 희망충주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#### 1) 제안이유

- 가. 다양하게 표출되는 주민욕구에 대한 선제적 능동적 대응체계 구축
- 나. 민간의 창의적이고 전문화된 지식을 행정에 접목시켜 참신한 시책 및 아이디어 발굴
- 다. 기존 의사결정 체제의 한계를 보완하여 외부의 정책 자문과 판단을 구함으로써 시정의 기본원리인 “섬기는 시정”을 구현

#### 2) 주요내용

- 가. 「희망충주정책자문단」의 기능 (안 제2조)
- 나. 「희망충주정책자문단」의 구성 (안 제3조)
- 다. 「희망충주정책자문단」의 회의 (안 제7조)
- 라. 「희망충주정책자문단」의 수당과 여비 (안 제13조)

## (2) 충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

### 1) 제안이유

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역 아동의 건전 육성과 아동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함

### 2) 주요내용

- 단체장의 책무(안 제3조)
  - 아동의 보호 및 건전육성을 위한 단체장의 책무를 명확히 함
- 센터의 사업(안 제5조)
  - 아동보호 및 건강증진 등 지역아동센터의 사업 내용을 정함
- 이용대상(안 제6조)
  -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대상의 범위를 정함
- 예산의 지원 등(안 제7조)
  - 지역아동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 함
- 위원회의 구성(안 제8조)
  -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중대하기 위한 심의기구를 구성 운영 함

## (3)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 1) 제안이유

조례에 미반영된 체육시설(탄금야구장, 시민의광장, 장애인론볼장 및 장애인테니스장)을 조례에 반영하여 사용료를 제정하고, 탄금 축구장 야간조명신설에 따라 야간사용료를 포함한 탄금축구장 사용료를 조정하고자 함.

## 2) 주요내용

- 가. 탄금잔디구장 명칭 변경 ⇒ 탄금축구장으로 (안 제2조)
- 나. 체육시설에 탄금야구장, 시민의광장, 장애인론볼 및 장애인테니스장 추가(안 제2조)
- 다. 체육시설 사용시간  
    하계(3월~10월), 동계(11월~다음해2월)로 구분개정(안 제9조)
- 라. 탄금축구장 사용시간을 1일 사용에서 1회(2시간)사용으로 사용료를 주간, 야간으로 구분하여 개정(안 제10조)
- 마.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정비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### (1) 희망충주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- 본 조례안은 변화하는 지방행정 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을 펼치기 위해 주요정책의 방향과 시책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충주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희망충주정책자문단의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
- 안 제2조에는 시장의 제안에 따른 정책의 방향 설정, 대안제시 및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, 각종 주요시책의 개선·시정·제안 등 시정에 대한 정책의견 제시, 지역 주요 현안의 해결에 관한 사항의 자문 등 정책자문단의 기능을 규정하고
-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는 정책자문단은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.

- 안 제10조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부서에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, 자료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고, 관련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하였음
- 안 제13조에는정책자문단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참석자에게는 「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음.
- 조례안 검토결과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제1항에 소관사무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심의회,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책자문단의 설치가 가능하고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 2에 목적을 달성하는데 효율적인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안 제4조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합함.다만, 조례의 제명은 자치단체의 명을 앞에 붙이고 조례의 내용을 요약하여 알 수 있도록 알기 쉽고 간결하여야 함으로 「희망충주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」를 「충주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」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제명이나 조례의 내용에 단체장의 구호로 볼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할 경우 개정의 필요성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음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크지 않게 수정(삭제)하는 것이 바람직하고

부칙의 정책자문단의 존속기한 규정은 조례 자체가 정책자문단에 관한 조례이므로 정책자문단에 대한 존속기한을 둘 것이 아니라 조례 전체에 대한 유효기간을 두는 것으로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

## (2) 충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

### ○ 본 조례안은

「아동복지법」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, 정서함양 등을 위하여 신고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

### ○ 우리시의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31개소가 등록되어 915명의 아동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으며

### ○ 2010년 지역아동센터 사업비는 운영비지원에 1,183,467천원 편성하여 아동정원, 종사자 수 등 시설규모를 감안하여 개소당 월 2,000천원에서 3,700천원까지 차등지원하고 있으며 이용아동 급식비는 594,000천원을 편성하여 이용 아동에게 1인 1식 3천원씩 지원하고 있음

### ○ 조례안의 주요내용은

지역아동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“충주시지역아동센터위원회”를 설치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 감독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임

## ○ 조례안 검토결과

아동복지법 제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명시되어 있고

아동복지법 제31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, 아동의 양육 및 보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며

### <아동복지법>

제4조(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.

제31조(비용보조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1.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
2. ~ 5호 생략

○ 금년도에도 아동복지법령과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는 국비 50%, 도비 15%, 시비 35% 비율로 지원하고,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는 국비지원은 없고 도비 40%, 시비 60%의 비율로 지원하고 있음으로

○ 아동의 건전한 발달과 양육을 도모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과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하여 지역아동센터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## (3)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본 조례안은

탄금잔디구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 재정비하여 명칭을 탄금축구장으로 변경하고

신설된 탄금야구장, 시민의 광장, 장애인론볼장 및 장애인테니스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례에 반영하여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

- 주요내용은

체육시설 사용시간에 대한 하계와 동계 구분이 불명확하여 하계와 동계에 기간을 하계는 3월 ~ 10월, 동계는 11월 ~ 다음해 2월로 명확히 규정하고

새로 정비 개장하는 탄금축구장 전용료를 1면당 1회 2시간 기준으로 하여 주간 40,000원, 야간 70,000원으로 정함

- 검토결과

하계와 동계의 구분을 명확하기 위하여 하계는 3월 ~ 10월, 동계는 11월부터 다음해 2월로 규정하고

새롭게 정비 개장하는 탄금축구장 전용료는 타 시 · 군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비교 검토하여 잘 책정된 것으로 판단되며

안 제6조 등 9개 조문 중 “각 호의 1”을 알기 쉽게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

## 4. 질의 · 답변 요지

### (1) 희망충주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▶ 질의 : 조례명을 희망충주 정책자문단이라고 했는데 “충주”앞에 “희망”을 쓴 이유는?

○ 답변 : 희망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“희망충주”라는 별도의 고유명사 명칭을 썼음

▶ 질의 : 안12조에 “정책자문단에서 제시하는 각종 정책대안이나 실천과정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정에 반영토록 한다.”로 명시돼 있는데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가?

○ 답변 : 자문기구이므로 자문만 할 뿐임.

▶ 질의 : 정책자문단과 비슷한 역할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능의 중복은 없는가?

○ 답변 : 시정조정위원회는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내부적으로 자문, 심의, 자문 등을 하고 있어 전문가로 하여금 정책자문을 듣고자 하는 것임.

### (2) 충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

▶ 질의 : 2008년도와 비교해 2009년도 지역아동센터수가 늘었나?

○ 답변 : 한 두개씩 들어나고 있음

▶ 질의 :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순번을 정해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이 좀 강화했으면?

○ 답변 : 충분히 이해하나 직원 한 사람이 여러 업무를 맡다보니 부족함이 있음

▶ 질의 : 등록된 지역아동센터에 종사자 수는 몇 명 정도인가?

○ 답변 : 센터장님들, 생활복지사 36명, 교사 29명, 급식교사 14명 임

### (3)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▶ 질의 : 현재까지는 축구장 1일 사용을 오전만 쓰면 오후엔 비워 놨었는가?

○ 답변 : 축구는 대개 한 게임이 2시간 미만인데 1일로 돼 있어서 오전만 사용해도 하루 전체 사용으로 허가하게 되어 실제 이용시간에 부합되게 1회 사용시간을 2시간으로 개정하려는 것임

## 5. 심사결과

-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(1) 희망충주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| : 수정가결 |
| (2) 충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        | : 수정가결 |
| (3)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| : 원안가결 |

## 6. 붙임

- (1) 희망충주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 1부.
- (2) 충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 수정안 1부.
- (3)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
## **희망충주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**

희망충주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명 “희망충주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”를 “충주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안 제1조와 제2조 중 “희망충주정책자문단”을 “충주시 정책자문단”으로 한다.

안 제12조를 삭제하고 안제 13조를 제12조로, 안 제14조를 제 13조로 한다.

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## < 수정안 조문 대비표 >

제 정 안	수 정 안
<b>희망충주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</b>	<b>충주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</b>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변화하는 지방행정 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을 펼치기 위해 주요정책의 방향과 시책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충주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<u>희망충주정책자문단</u>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기능) <u>희망충주정책자문단</u>(이하 “정책자문단”이라 한다)은 충주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의 제안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제12조(정책반영) 시장은 정책자문단에서 제시된 각종 정책대안이나 실천과제에 대하여 최대한 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.</p> <p>제13조(수당과 여비) 정책자문단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참석자에게는 「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제14조(운영규정)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_____</p> <p>_____</p> <p>_____</p> <p>_____</p> <p>_____ <u>충주시 정책자문단의</u> _____</p> <p>_____</p> <p>_____</p> <p>_____ .</p> <p>제2조(기능) <u>충주시 정책자문단</u>(이하 “정책자문단”이라 한다)은 _____</p> <p>_____</p> <p>_____ .</p> <p>1. ~ 4.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작제</p> <p>제 12조 (제정안 제13조와 같음)</p> <p>제 13조 (제정안 제14조와 같음)</p>
<b>부칙</b>	<b>부칙</b>
제2조(존속기한) 정책자문단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	제2조(유효기간)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## **충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 수정안**

충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4조 제1항 중 “수시로 지도·점검하게 할 수 있다.”를 “연 2회 이상 지도·점검하여야 한다.”로 한다.

### **< 수정안 조문 대비표 >**

제정안	수정안
<p>제14조(지도감독)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신고된 센터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및 설비기준, 안전사고예방, 종사자 관리, 재정관리 상태 등 운영전반에 대하여 <u>수시로 지도·점검하게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14조(지도감독) ① _____</p> <p>_____</p> <p>_____</p> <p>_____ 연 2회</p> <p>이상 지도·점검하여야 한다</p> <p>②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③ (제정안과 같음)</p>